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모범업소 지정제도 폐지 등〉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620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모범업소 지정제도 폐지 .....            | 3  |
|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 확대 ..... | 11 |



## I. 개요

###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620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7.

(3) 회 부 일 : 2025. 1. 20.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

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모범업소 지정제도 폐지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삭제).

| 현행                                                                                                                                                                                                                                                                                                                          | 개정안                       |
|-----------------------------------------------------------------------------------------------------------------------------------------------------------------------------------------------------------------------------------------------------------------------------------------------------------------------------|---------------------------|
| <p><u>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u></p> <p><u>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u></p> | <p><u>&lt;삭 제&gt;</u></p> |

| 현행                                                                                                                                                                                                                                                                                     | 개정안 |
|----------------------------------------------------------------------------------------------------------------------------------------------------------------------------------------------------------------------------------------------------------------------------------------|-----|
| <p><u>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u></p> <p>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④ <u>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p> |     |

※ 시행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나. 검토의견

□ (모범업소 지정제도 폐지) 현행법 제47조<sup>1)</sup>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이하 “모범업소 지정제도”라 함)할 수 있으며,

현행법 제47조의2<sup>2)</sup>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이하 “음식점 위생등급제”라 함)할 수 있음.

□ 즉,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제도’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2개의 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두 제도를 비교해 보면, ‘위생개선’ 등 제도 목적이 동일하고, 주 대상이 일반음식점이며,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15개 세부기준이 일치하고, 표지판 제작·교부 및 출입·검사·수거 등 2년간 면제 가능,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식품진흥기금) 등 혜택도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

1) 「식품위생법」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 <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비교 >

| 구 분  |      | 모범음식점                                                                                                                                                                         | 음식점 위생등급제                                                                                                                                                                                                                    |
|------|------|-------------------------------------------------------------------------------------------------------------------------------------------------------------------------------|------------------------------------------------------------------------------------------------------------------------------------------------------------------------------------------------------------------------------|
| 목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생개선</li><li>• 서비스 수준 향상</li><li>• 낭비없는 음식문화</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생수준 강화</li><li>*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통일된 인증제도</li></ul>                                                                                                                                     |
| 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반음식점(전체의 5% 이내 지정)</li><li>• 집단급식소</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li></ul>                                                                                                                                                        |
| 평가항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총 22개</li><li>• 기준: 85점 이상</li><li>* 우수, 보통, 미흡으로 차등배점 가능</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총 44개</li><li>•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표시</li><li>*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5~90점) 좋음(80~85점)</li></ul>                                                                                               |
|      | 위생관련 | 10개 항목 / 20개 세부기준                                                                                                                                                             | 38개 항목 / 99개 세부기준                                                                                                                                                                                                            |
|      |      | 동일 기준: 15개 세부기준                                                                                                                                                               |                                                                                                                                                                                                                              |
| 평가주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도, 시·군·구</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식약처, 시·도, 시·군·구</li></ul>                                                                                                                                                            |
| 유효기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년</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년</li></ul>                                                                                                                                                                         |
| 지정개소 |      | 12,103개소('23년 기준)                                                                                                                                                             | 60,072개소('23년 기준)                                                                                                                                                                                                            |
| 혜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표지판 제작·교부</li><li>• 출입·검사·수거 등 2년간 면제 가능</li><li>•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식품진흥기금)</li><li>•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지원(식품진흥기금)</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표지판 제작·교부</li><li>• 출입·검사·수거 등 2년간 면제 가능</li><li>•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식품진흥기금)</li><li>•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식품진흥기금)</li><li>•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신청 기술지원 사업(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 대상)</li></ul>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만, 차이점으로는 모범업소 지정제도의 경우 평가대상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이고<sup>3)</sup> 평가주체가 지자체이며, 평가자가 지자체 별로 구성되는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이고 유효기간이 1년(영업자의 별도 신청없이 담당 공무원이 적합여부를 현지조사하는 자동재심사)인 반면,

#### 3)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고시)

**제2조(대상업소)** 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모범업소"라 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경우 평가대상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고,<sup>4)</sup> 평가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이며, 평가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평가자이고 유효기간이 2년(영업자 신청)이라는 점임.

□ 두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모범업소 지정제도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제5099호, 1995.12.29. 일부개정)으로 1996년 9월 도입되었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18. 일부개정)으로 2017년 5월 도입되었음.

□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당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위생과는 무관한 음식점 인증이 남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었음.<sup>5)</sup>

□ 그런데, 당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7315)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인증제 부착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향후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될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7315) 심사보고서(2015.4)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범음식점 제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47조를 삭제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일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모범업소 지정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2017년 710개소에서 2024년 19,467개소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모범업소는 2017년 17,501개소에서 2024년 11,684개소로 감소하고 있으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과 모범업소 지정을 모두 받은 업소도 2024년 8월 기준 652개소에 달하고 있음.

###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 >

(단위: 개소)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합 계   | 710  | 1,359 | 3,125            | 9,991            | 13,005           | 15,821           | 16,061           | 19,467           |
| 일반음식점 | 710  | 1,359 | 1,457<br>(46.6%) | 2,754<br>(27.6%) | 5,934<br>(45.6%) | 6,497<br>(41.1%) | 7,826<br>(48.7%) | 8,734<br>(44.9%) |
| 휴게음식점 | -    | -     | 1,498<br>(47.9%) | 5,854<br>(58.6%) | 6,059<br>(46.6%) | 8,262<br>(52.2%) | 7,366<br>(45.9%) | 9,702<br>(49.8%) |
| 제과점   | -    | -     | 170<br>(5.5%)    | 1,383<br>(13.8%) | 1,012<br>(7.8%)  | 1,062<br>(6.7%)  | 869<br>(5.4%)    | 1,031<br>(5.3%)  |

### < 모범업소 지정 현황 >

(단위: 개소)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모범음식점 | 17,501 | 16,543 | 14,922 | 13,950 | 12,959 | 12,793 | 12,103 | 11,684 |

###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모범업소 지정을 모두 받은 업소 현황 >

(단위: 개소)

| 연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 '24.8 | 103 | 7  | 8  | 30 | 2  | 7  | 8  | -  | 90 | 35 | 37 | 16 | 23 | 81 | 187 | 12 | 6  | 652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만, 모범업소의 지정 대상에는 식품접객업소 외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되는 반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접객업소만 그 지정 대상으로 하는바, 개정안과 같이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등)를 삭제하는 경우 집단급식소는 위생 관련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약 4만 6,000여개소가 운영 중이나,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5개소이며, 2018년 이후 추가로 지정된 곳은 없음.

□ 한편, 개정안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단서를 두어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모범업소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임.

## 다. 관계 부처 의견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등급제로 통합하여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함.
- 집단급식소(지정된 5개소 포함) 폐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며, 집단급식소의 운영은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율경쟁을 통한 이윤창출이 아닌 해당 시설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시설관리임을 고려할 때 위생등급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 확대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 현행                                                                               | 개정안                                                               |
|----------------------------------------------------------------------------------|-------------------------------------------------------------------|
|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 ① ~ ④ (생략)                                                                       |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u>2년</u> 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br>----- <u>3년</u> -----<br>---. -----<br>-----<br>-----. |
| ⑥ ~ ⑪ (생략)                                                                       | ⑥ ~ ⑪ (현행과 같음)                                                    |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생등급 지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함.

□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 확대) 현행법 제47조의2<sup>6)</sup>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총리령<sup>7)</su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최근 4년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업소 대비 지정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2024년 기준 8.8%에 불과하고,

특히 전체 대상업소의 76%에 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상업소 대비 지정률이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당초 도입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

6)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⑪ (생략)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 최근 4년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 >

(단위: 개소, %)

| 연도   | 대상업소 수(A) |           |           |        | 위생등급 지정업소 수(누적)(B) |           |           |       | 지정률<br>(B/A) |
|------|-----------|-----------|-----------|--------|--------------------|-----------|-----------|-------|--------------|
|      | 계         | 일반<br>음식점 | 휴게<br>음식점 | 제과점    | 계                  | 일반<br>음식점 | 휴게<br>음식점 | 제과점   |              |
| 2021 | 890,695   | 681,165   | 190,353   | 19,177 | 28,190             | 12,214    | 13,411    | 2,565 | 3.2          |
| 2022 | 908,092   | 689,572   | 199,087   | 19,433 | 44,011             | 18,711    | 21,673    | 3,627 | 4.9          |
| 2023 | 916,869   | 695,833   | 201,683   | 19,353 | 60,072             | 26,537    | 29,039    | 4,496 | 6.6          |
| 2024 | 900,952   | 684,607   | 197,298   | 19,047 | 79,539             | 35,271    | 38,741    | 5,527 | 8.8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더욱이 2년의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 경과 후, 연장 현황을 살펴보면, 연장 신청률은 2021년 63.1%에서 2024년 60.2%로 하락하는 등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험이 있는 업소에게도 위생등급제 지정에 따른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 최근 5년간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현황 >

(단위: 개소, %)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
| 연장대상(A)    | 3,125 | 9,991 | 13,005 | 15,821 |
| 연장신청(B)    | 1,971 | 6,098 | 7,773  | 9,529  |
| 재지정(C)     | 1,918 | 5,991 | 7,499  | 9,407  |
| 연장신청률(B/A) | 63.1  | 61.0  | 59.8   | 60.2   |
| 재지정률(C/A)  | 61.4  | 60.0  | 57.7   | 59.5   |

- 현행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현행법 제22조<sup>8)</sup>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 2년 동안

면제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9)의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에 우선 지원<sup>10)</sup>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1)</sup>

8)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9)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47조제2항 및 제89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 신청업소와 위생등급 지정 받은 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1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③ (생략)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⑦ (생략)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

□ 그런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고시) 제7조<sup>12)</sup>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또는 연장 신청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하면,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지정하고 있는바,

현행법 제22조에 따른 2년 동안 출입·검사·수거 등의 면제 혜택이 그다지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2025년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는 2027년까지 2년간 위생등급 지정이 유효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60일까지 연장(2년)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2025년 신규 지정평가 및 2027년 연장 평가를 받아야 함.

---

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2)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지정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2. 영업신고증

② 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또는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에서는 별표 1의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지정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관은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지정기관에서는 위생등급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규정은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별표 2에 따른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작·발급하여야 한다.

⑦ ~⑧ (생략)

□ 이에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의 면제 혜택이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은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이 지정된 위생등급에 부합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유효기간을 짧게 정할수록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의 위생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낮은 위생등급 평가가 음식점에 부담을 주어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다. 관계 부처 의견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영업부담 완화,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 관리·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493

## 참고 1

##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개요

### □ [도입 취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발의(김현숙 의원, '13.10)

- 외식 증가에 따른 안전확보, 모범업소 제도를 대신할 인증제 필요
- 외식산업은 자영업율이 높은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위생수준 열악
- 적은 지자체 인력에 따른 음식점 위생관리의 구조적 한계

음식점의 위생 수준 객관적 평가, 등급 부여 및 의무표시(공표) → 소비자 선택권 강화, 음식점간 자율경쟁 유도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 □ [평가 개요] 위생등급 신청, 평가 및 결과 공표

| 구 분 |      | 주요 내용                                    |
|-----|------|------------------------------------------|
| 신청  | 대상   | 식품접객업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 평가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결과  | 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br>*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 가능 |
|     |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 게시                  |
| 기타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
|     | 혜택   | 기술지원, 홍보, 시설·설비 개·보수 용자지원 등              |

### □ [평가 항목] 총 3개 분야로 구성(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 기본분야(5개 항목)·일반분야(33개 항목)·공통분야(6개 항목) ☞ 44개 항목

| 구 분   |                   | 세부 평가항목                                                                        |
|-------|-------------------|--------------------------------------------------------------------------------|
| 기본 분야 | 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개인위생관리 준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 일반 분야 |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전 문 및 공유주방 교차오염 방지 등                         |
| 공통 분야 | 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 ▶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여부,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여부, 장기 근속자 근무여부 등 |

## 참고 2

## 주요 통계

□ **[평가·지정 현황]** 신청 92,770개소, 등급지정 79,539개소(85.7%)

| 구 분       | 결과별           |               |               | 등급별           |               |              |              |               |
|-----------|---------------|---------------|---------------|---------------|---------------|--------------|--------------|---------------|
|           | 합계            | 지정            | 보류            | 소계            | 매우우수          | 우수           | 중음           | 보류            |
| <b>누계</b> | <b>92,770</b> | <b>79,539</b> | <b>13,231</b> | <b>92,770</b> | <b>65,930</b> | <b>8,694</b> | <b>4,915</b> | <b>13,231</b> |
| 2024      | 20,537        | 19,467        | 1,070         | 20,537        | 17,650        | 1,364        | 453          | 1,070         |
| 2023      | 17,209        | 16,061        | 1,148         | 17,209        | 14,304        | 1,308        | 449          | 1,148         |
| 2022      | 17,233        | 15,821        | 1,412         | 17,233        | 13,483        | 1,738        | 600          | 1,412         |
| 2021      | 15,304        | 13,005        | 2,299         | 15,304        | 10,451        | 1,692        | 862          | 2,299         |
| 2020      | 11,549        | 9,991         | 1,558         | 11,549        | 7,629         | 1,621        | 741          | 1,558         |
| 2019      | 5,093         | 3,125         | 1,968         | 5,093         | 1,833         | 469          | 823          | 1,968         |
| 2018      | 3,450         | 1,359         | 2,091         | 3,450         | 318           | 297          | 744          | 2,091         |
| 2017      | 2,395         | 710           | 1,685         | 2,395         | 262           | 205          | 243          | 1,685         |

□ **업종별 위생등급 지정현황**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b>합 계</b> | <b>710</b> | <b>1,359</b> | <b>3,125</b>     | <b>9,991</b>     | <b>13,005</b>    | <b>15,821</b>    | <b>16,061</b>    | <b>19,467</b>    |
| 일반음식점      | 710        | 1,359        | 1,457<br>(46.6%) | 2,754<br>(27.6%) | 5,934<br>(45.6%) | 6,497<br>(41.1%) | 7,826<br>(48.7%) | 8,734<br>(44.9%) |
| 휴게음식점      | -          | -            | 1,498<br>(47.9%) | 5,854<br>(58.6%) | 6,059<br>(46.6%) | 8,262<br>(52.2%) | 7,366<br>(45.9%) | 9,702<br>(49.8%) |
| 제과점        | -          | -            | 170<br>(5.5%)    | 1,383<br>(13.8%) | 1,012<br>(7.8%)  | 1,062<br>(6.7%)  | 869<br>(5.4%)    | 1,031<br>(5.3%)  |

□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모범음식점 | 17,501 | 16,543 | 14,922 | 13,950 | 12,959 | 12,793 | 12,103 | 11,684 |

\* 매년 감소 추세

## 참고 3

## 위생등급 표시 및 지원혜택

### □ 지정업소 혜택

- (점검면제) 지정기간(2년) 지도·점검·수거 면제(식품위생법)
- (지정표시·홍보) 표지판 제공, 포장배달 시 지정사실 표시(스티커 등) 등
- (지원) 시설개보수 비용 용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등 위생물품 지원

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매장 및 온라인)

- 매장 표지판, 배달 시 스티커, 네이버 플레이스,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먹깨비, 대구로, 인천e음)에 정보 표출

####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지판>



#### <배달앱, 포털 사이트 정보표출 화면>

